

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

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(이하 “양 관계국”이라 한다)는,

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 자유무역협정(이하 “협정”이라 한다)의 제 14 장(농림수산협력)에서 양 관계국 간의 양해를 상기하면서,

다음과 같은 약정에 도달하였다.

제 1 항 목적

이 약정은 협정의 제 14 장(농림수산협력)에서 양 관계국 간에 도달한 양해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항 협력 활동

1. 이 약정의 모든 활동은 3년 후 주기적으로 평가되고, 양 관계국이 합의하는 경우 지속될 것이다.
2. 개시되고 완료되지 않은 모든 활동은 지속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(예컨대, 1년 이상 지속되는 장학금).

영어 연수

3. 뉴질랜드는 대한민국의 농어촌에 위치한 농업 및 수산업 지역사회의 초등 또는 중등학교 학생을 위해, 뉴질랜드에서 영어 어학연수를 하는데 있어서, 각 8주의 기간 동안 연간 최대 150명에게 장학금을 제공할 것이다.

질병 위험 분석 훈련 프로그램

4. 뉴질랜드는 대한민국의 연간 최대 6명의 공무원과 과학자를 위해 동물질병 위험 분석 훈련 프로그램(이하 “대한민국-뉴질랜드 동물 질병 위험 분석 훈련 프로그램”이라 한다)을 제공한다.
5. 뉴질랜드 일차산업부(이하 “MPI”라 한다)와 뉴질랜드의 관련 3차 기관은 대한민국-뉴질랜드 동물 질병 위험 분석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. 이 프로그램은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 위험 분석에 초점을 맞추며, 영어로 진행될 것이다.

동물 건강 및 수의 역학 워크샵

6. 양 관계국은 공동으로 “대한민국–뉴질랜드 동물 건강 및 질병 역학 워크샵”을 마련할 것이다. 이 워크샵은 각 관계국에서 교대로 개최되며, 개최하는 관계국은 워크샵의 개최를 위한 적절한 재원을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.

수산 과학 훈련 프로그램

7. 뉴질랜드는 연간 최대 6 명의 대한민국의 관련 기관 공무원과 과학자에게 뉴질랜드에서 수산 과학 훈련 프로그램(이하 “대한민국–뉴질랜드 수산 과학 훈련 프로그램”이라 한다)을 제공할 것이다.

8. MPI 의 수산 과학자는 영어로 진행되는 대한민국–뉴질랜드 수산 과학 훈련 프로그램을 지도할 것이다.

임업 협력 및 연구 프로그램

9. 뉴질랜드는 Scion(뉴질랜드 임업 연구소)이 대한민국 관련 기관의 최대 2 명의 산림 연구원(공무원을 포함한다)을 위한 파견근무 기회를 제공하도록 장려할 것이다. 그러한 기회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, 대신 최대 2 명을 위한 추가 장학금이 산림 연구원(공무원을 포함한다)에게 제공될 것이다.

장학금

10. 뉴질랜드는 대한민국 학생을 위하여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에서 뉴질랜드의 대학교의 대학원 프로그램의 전체 학기 기간 동안 연간 최대 2 명에게 장학금을 제공할 것이다.

11. 뉴질랜드는 대한민국 학생을 위하여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에서 뉴질랜드의 대학교의 대학원 프로그램의 전체 학기 기간 동안 연간 최대 2 명에게 장학금을 제공할 것이다.

12. 뉴질랜드는 대한민국 학생을 위하여 임업분야에서 뉴질랜드의 대학교 또는 3 차 기관의 대학원 프로그램의 전체 학기 기간 동안 연간 최대 2 명의 장학금을 제공한다.

시장 내 협력 및 합작 투자

13. 양 관계국은 적절한 경우 대한민국, 뉴질랜드 또는 그 밖의 시장에서 상호 호혜적인 시장 내 협력과 합작 투자를 장려할 것이다.

14. 이 약정의 발효로부터 12 개월 이내에, 양 관계국은 각각 합작 투자 기회를 포함하여 상호 호혜적인 농업 협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것이다. 각 관계국이

확인한 기회는 어떠한 분야가 추가적인 조치에 적합할지 결정하기 위해 협정 제 14.8 조(농림수산협력위원회)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협력위원회가 검토할 것이다.

15. 양 관계국은 적절한 경우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와 같은 상호 호혜적인 시장 내 행사에서 협력을 검토할 것이다.

추가적 활동

16. 양 관계국은 협정 제 14.8 조(농림수산협력위원회)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협력위원회의 주관 하에 추가적인 협력 활동을 위한 기회에 관해 대화를 지속할 것이다.

17. 추가적인 협력 활동은 제 4 항에 규정된 절차를 이용하여 이 약정에 통합될 수 있다.

제 3 항 이행

1. 이 약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협력 활동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각각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.

2. 비용은 원칙적으로 양 관계국이 동등하게 분담할 것이다. 비용의 분배는 재정적 및 비재정적 기여와 각 관계국의 능력을 고려할 것이다.

3. 어느 한쪽 관계국이 이 약정 하의 협력 활동의 맥락에서 또는 그 결과로 교환, 취득 또는 공유될 수 있는 비밀자료 또는 정보를 제 3 관계국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, 공개하려는 관계국은 관계국의 국내 법령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,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른 쪽 관계국의 사전 동의를 구할 것이다.

제 4 항 수정

1. 이 약정은 양 관계국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. 수정은 양 관계국이 서면으로 상호 결정하는 일자에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.

2.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이 약정의 수정을 위한 제안은 양 관계국 간 직접적으로 양 관계국에 의해 또는 협정의 제 14.8 조(농림수산협력위원회)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통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.

제 5 항 발효, 기간 및 종료

1. 양 관계국의 서명에 따라, 이 약정은 협정의 발효일과 동일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.
2. 이 약정은 3년 간 효력을 유지하고, 어느 한쪽 관계국이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, 추가적 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될 것이다.
3. 종료는 이 약정을 종료하겠다는 어느 한쪽 관계국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지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.
4. 이 약정의 종료는 양 관계국이 공동으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, 장학금과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 중인 장학금과 활동의 기간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.

2015년 3월 23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서명되었으며, 양 문안이 동등하게 유효하다.

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

뉴질랜드 정부를 대표하여